

# 안 내 문

받는 분 : 창투자사/LLC/신기사 등 VC 대표이사 보내는 사람 : 한국벤처캐피탈협회

참 조 : 기획관리담당 부서장 날 짜 : 2023. 5. 31.

대표번호 : 02-3017-7045 분 량 : 1매

제 목 :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법률 안내

■ 법령/제도 안내 □ 출자공고문안내 □ 경조사안내 □ 회원사 등 변경사항 안내 □ 의견수렴 □ 기타

안녕하십니까,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입니다.

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일부 개정안이 5월 26일 국회를 통과하여 주요내용을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 <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주요개정내용>

-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'벤처투자회사'로 명칭 변경 (제2조)
  - '벤처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'로서 회사명칭을 '벤처투자회사'로 변경
- 조건부지분인수계약에 관한 정의 변경 (제2조)
  - '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통한 지분 인수'에서 '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체결'로 변경
-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신설 (제2조)
  - 무담보전환사채의 발행을 사전에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을 투자의 정의에 신설
- 투자조건부융자계약 신설 (제2조, 제70조)
  - 벤처투자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법인에 융자기관이 저리융자를 제공하고 소액의 지분인수권을 획득할 수 있는 투자조건부융자계약 제도의 근거 신설
- 창업기획자 겸업 창투자사의 투자 의무 및 행위제한 완화 (제26조, 제27조, 제51조)
  - 창업기획자를 겸업하는 창투자사는 창투자사의 행위제한 규정(제39조)만을 따름
  - 창업기획자를 겸하는 창투자사, 신기술사업전문회사, LLC는 창업기획자의 투자 의무를 적용하지 않되,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벤처투자조합을 결성 및 운용해야 함
-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요건 추가 (제49조)
  - 경영건전성 개선 요구 미이행 또는 투자실적 미보고 시, 해당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등록의 취소 등 행정처분 추가
- 창업투자회사 등록요건 완화 (제37조)
  - '상법'에 따른 유한(책임)회사 형태의 투자회사 및 제66조 따라 설립된 법인도 창투자 가능

- **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의 투자 의무 및 등록의 취소 (제51조, 제62조)**
  -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 및 합병하거나 타 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해 투자 의무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투자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해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 가능
- **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설립요건 등 신설 (제51조, 제62조)**
  - 자금차입이 가능한 투자목적회사를 벤처투자조합의 재원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, 투자목적회사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립 또는 운영하는 경우 벤처투자조합 등록취소가 가능

※ 문의: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정책연구팀 (이메일: [eunj5307@kvca.or.kr](mailto:eunj5307@kvca.or.kr) / Tel: 02-3017-7045)